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78 발의연월일: 2023. 2. 7.

발 의 자:김미애・金炳旭・이헌승

양금희 · 지성호 · 이채익

한무경 · 성일종 · 정경희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사범의 꾸준한 증가와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성 증가는 이미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하여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역할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 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

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제2조의5 신설).

한편, 마약류는 높은 의존성·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나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교육 등을 수행 중이 나, 그 사업의 중요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자 규모 대비 재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적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를 "적정한 취급·관리와" 로. "방지하여"를 "방지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로 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4(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소관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5년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관계기관의 역할 및 협력사항

-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장은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5(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 류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 ·치료·재활·교육·홍보 관련 기관간의 협조사항
 -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 · 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 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국가정보원차 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 청차장·해양경찰청차장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 3.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 종사자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 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

-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상담 ·홍보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과 활용
- 4. 사회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정보(「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수집ㆍ이용
- 5.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활용과 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 중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	제1조(목적)
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	
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u>취급</u>	<u>적정</u>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u>한 취급·관리와</u>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의 위해(危害)를 <u>방지하여</u> 국	<u>방</u> 지함으로써
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	
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	
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	
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	
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u>조치</u>	<u>조치</u>
<u>를 하여야</u> 한다.	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건을
	<u>조성하여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조의4(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
	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
	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마약 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5년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관계기관의 역할 및 협력사항
-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 실장에게 제출하고, 국무조정실 장은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 ·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5(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 · 단속·치료·재활·교육· 홍보 관련 기관간의 협조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u>관</u>련 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중앙행 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 다.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 차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 장·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 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 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 차장·해양경찰청차장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 3. 마약류 관련 단체 · 연구기관 과 학계 · 언론계 종사자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신 설>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 장이 위촉하는 자

-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 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 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 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상담·홍보등 사업(이하

- "사회재활사업"이라 한다)
-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과 활용
- 4. 사회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수집ㆍ이용
- 5.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 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마약류·원료물질 의 <u>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u>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 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 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 활용과 정보의 수집·이용, 제2 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방법·절 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국제협력)	
	- – –
안전관리, 오남용예방 및	사
회재활사업	- — —
	· — —
<u>.</u>	